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국무총리 지시 제 12 호 (70-2012) 1974. 6. 25

수신 :

제목 : 가정의례 준칙의 이행촉구

1.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검소한 국민생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73. 6. 1 이를 시행한 이래 점차 의례준칙이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중에는 가정의례준칙을 위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협의, 계몽보급은 계속 추진토록 하되 앞으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위반자에 대한 단속 업무강화에 역점을 두어 검소한 생활자세의 확립을 기하여야 하겠읍니다.

3. 따라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외에 기히 시달한 국무총리 훈령 제 111 호 (73. 4. 9)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지시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보건사회부는 가정의례에 관하여 각 기관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전 행정기관, 정부관리 기업체 및 국민에게 더욱 널리알리고 이행을 촉구할것.

나. 전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의 실천계획에 따라 소관을 떠나 협조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단속, 국민계몽에 힘쓸것.

다. 내무부는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할것.

라. 문교부는 각급학교 학생에게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학생을 통해 각 가정에 검소한 생활관념을 제고토록 할것.

마. 문화공보부는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계몽에 만전을 기할것.

바. 총무처는 국무총리 훈령 제 111 호(73. 4. 9)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 실시할것.

유첨 : 국무총리 훈령 제 111 호 (73. 4. 9) 1 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나

국무총리 훈령 제 111 호 1973. 4. 9

제목 : 검소한 생활자세 확립

모든 공무원과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을 솔선수범하고 사치와 낭비 그리고 허례허식의 폐습을 일소하여 검소하고 근면한 생산적 생활 기풍의 선도자가 될것을 이미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1973. 6. 1 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허례허식에 치우친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의 진작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는 바 10월 유신과업과 새마을 운동의 추진에 앞장서야 할 모든 공무원과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은 검소한 생활자세 확립에 솔선수범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의 실천을 다시 강조하니 이미 시달한 국무총리 훈령 제 105 호 (1972. 5. 19)는 물론 다음사항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가정의례의 엄수

가. 가정의례에 있어서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허례허식 행위를 일체 금지할것.

(1) 청첩장, 또는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2) 화환, 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전열 또는 사용
(3) 답례품의 증여
(4) 굴건제복의 착용

(5) 만장의 사용

(6)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나. 가정의례의 모든 의식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간소하게 할것.

다. "가" 항의 금지사항 이외에도 공, 사생활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치와 낭비적인 행위를 삼가할것.

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은 73. 6. 1 부터 시행되지만, 모든 공무원과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은 이 훈령에 의거 동 법률에 규정된 제반사항의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모든 국민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법제화의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계몽에 적극 노력할것.

2. 감독 보고

가. 각급기관의 장은 제 1항의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소속 직원에게 이를 계몽지도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상황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참작할것.

나.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이 훈령 및 가정의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허례허식 행위를 경고, 징계 조치등 엄중 문책할것.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이행상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다음달 5일까지 총무처장관을 경우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할것.

라. 보사부장관은 국무총리 훈령 제 105호 (1972. 5. 19) "다" 항에 의거 신문, 방송과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 가정의례의 준수를 적극 계몽하고, 그 실적을 조사하여 매월 국무총리에게 보고할것. 끝.